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해성기공(문일섭, 문남준) ② (주)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안영길, 문용민) ③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김대철, 권순호) ④ 에스케이건설(주)(안재현, 임영문) ⑤ (주)한화건설(최광호)

나. 전화번호 : ① 02-733-8666 ② 02-3471-4144 ③ 02-2008-9114 ④ 02-3499-1623 ⑤ 02-2055-6000

2. 명칭 : 골형 웹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기타철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공장, 창고, 물류창고, 비행기 격납고,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넓은 무주공간이 필요한 건축물(구조물)의 지붕보로 적용되는 것으로, 상하부 플랜지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웹브는 얇은 강관을 파형 또는 제형으로 가공한 후 상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각형강관에 용접 조립하여, 별도의 중간스티프너로 보강하지 않더라도 전단력에 대한 국부좌굴강도가 우수하고, 휨강도와 전단강도가 뛰어난 역학적 성능을 가진 골형 웹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된 지붕보 기술이다.

<범위>

상하부 플랜지는 판폭두께비 $\lambda \leq 1.40$ 을 만족하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웹브는 두께 3.2mm 이상으로 판폭두께비 $hw/tw \leq 600$ 을 만족하는 골형강관으로 하여 플랜지와 웹브를 양면 전 길이 모살 용접하여 제작되며 기둥 중심간 거리 70m 이하에 적용되는 지붕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kkong8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4, 팩스 :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